

총동아리연합회 규정

제정 : 2020.09.25.

개정 : 2021.10.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동아리의 다양화,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자치기구으로써 대학 규정에 명시된 동아리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본회는 동아리 홍보, 행사, 교류 등 학내 동아리 활성화와 대학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 ① 본회 회원은 정규동아리와 준동아리에 가입된 회원으로 한다.
- ② 동아리는 대학 규정 및 본 규정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가진다.
- ③ 동아리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자치기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④ 본회 회원은 규정 및 심의·의결기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구성) 본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심의·의결기구 : 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분과회의
- ② 집행기구 : 기획운영팀, 커뮤니케이션팀, 디자인팀, 활동복지팀(개정 2021.03.04.)
 - 기획운영팀 : 동아리 전반적인 운영 및 행사를 기획, 실행한다.
 - 커뮤니케이션팀 : 동아리, 재학생, 총동아리연합회 간의 소통을 담당한다.
 - 디자인팀 : 동아리 전반적인 게시물 디자인, 홍보를 담당한다.
 - 활동복지팀 : 동아리 활동 복지를 담당한다.
- ③ 분과 : 문화, 봉사, 종교, 체육

제5조(총동아리연합회장)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이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심의·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임기는 당선 시부터 차기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

- ① 유권자는 동아리 대표로 구성된다.
- ② 동아리 대표 부재 등 투표참여가 불가할 경우 위임을 통해 대리선거 할 수 있다.
- ③ 회장, 부회장은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이하 임원은 대표자회의를 통해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2장 대표자회의

제7조(구성) 회장, 부회장, 팀장, 분과별 대표, 정규동아리 대표로 구성한다.(개정 2021.03.04.)

제8조(권한)

- ① 동아리 전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② 심의·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와 분과의 신설, 통폐합을 심의한다.

- ③ 학교 규정 및 본 회 규정 개정에 대한 발의 및 심의를 한다.
- ④ 기타 주요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9조(회의)

- ① 정기회의는 학기별 1회 진행한다.
- ② 임시회의는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3일 전에 회의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의결)

- ①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참석이 어려운 경우 회장의 사전승인 후 위임을 통해 대리참석이 가능하다.

제3장 중앙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회장, 부회장, 팀장, 분과별 대표로 구성한다.(개정 2021.03.04.)

제12조(권한)

- ① 동아리 상·별점 및 징계를 의결한다.
- ② 동아리 평가 결과를 의결한다.
- ③ 기타 동아리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의결)

- ①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사안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분과회의

제14조(구성) 분과별 대표, 동아리 대표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서 분과장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제15조(업무)

- ① 동아리의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 각 분과에 속한 동아리 간의 이견을 조정한다.
- ③ 사안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동아리 징계

제16조(경고와 제명) ① 본 회의 목적과 집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동아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경고 심의는 별점이 15점 이상인 동아리
2. 제명 심의는 별점이 25점 이상 또는 경고가 2회 이상인 동아리
3.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필요 시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명이 결정된 경우 학생지원팀으로 즉시 통보하며, 학생취업처장의 승인을 통해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상별점) ① 상별점 산정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차기년도 2월말까지로 하며 누적

하지 않는다.

- ② 상별점 부여 및 조치사항은 별첨2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장 동아리 활동 일지

제18조(작성 및 제출) 동아리의 운영 및 활동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동 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동아리는 매년 12월 중 총동아리연합회가 공고하는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내용) 활동 일지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1. 월별 활동내용
2. 대내외 활동 및 참여자 현황
3. 공모전 및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현황
4. 위 사항에 대한 사진과 증빙자료

제7장 동아리 평가

제20조(목적)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내 동아리 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동아리 평가를 시행한다.

제21조(평가기준) ① 총동아리연합회에서 공고하는 시점에서 제출된 활동일지 평가점수와 당해연도 누적된 상별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활동일지는 별첨1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상별점으로 인한 상한은 없다.

③ 활동일지 평가는 총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분과별 대표가 한다.

제22조(정규동아리) ① 당해연도 2학기에 제출된 동아리 회원 수로 차기년도 분과별 정규 동아리 수를 산정하며 동아리 수는 별첨3을 따른다.

② 동아리방은 회원 수가 40명 이상인 동아리에게만 배정하며, 동아리 평가, 회원 수 등 우선순위는 학생지원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평가결과) ① 합산점수에 따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한다.

1. 정규동아리 선정 : 총점 순으로 결정한다. 단, 총점 순으로 결정하더라도 70점 미만인 동아리는 정규동아리가 될 수 없다. 동점인 경우 활동내역, 활동적정성, 예산집행, 회원수 순으로 우선한다.
2. 제명 : 60점 미만인 경우
3. 평가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평가결과는 학생지원팀으로 즉시 통보한다.

제8장 회칙 개정

제24조(발의)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에서 발의하거나, 총동아리연합회장 발의로 한다.

제25조(공포) ① 최초 제정은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학 장학지도위원회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② 추후 개정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학생취업처장 승인을 통해 공포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①본 규정은 2020학년도 2학기 학기개시일부터 소급적용된다.

② 2020학년도의 경우 감염병 재난에 따라 동아리 평가는 미 실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①개정 규정은 202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코로나로 인해 2021학년도 동아리 평가 및 상벌점은 별첨4와 별첨5로 시행한다.

(별첨1) 평가기준

구분	평가내용	점수
활동 적정성	활동내용이 매우 우수 (실적, 내용수준, 대내외적 활동 등)	30
	활동내용이 우수하다 (사진, 내역등 증빙 충분)	25
	활동내용이 보통이다 (사진 내역 부분 부족한 부분)	20
	활동내용 및 보고서 미비 (증빙자료 없음)	15
활동내역	동아리가 대내외적으로 활동 13회 이상 개최 및 활동	40
	동아리가 대내외적으로 활동 11~12회 개최 및 활동	30
	동아리가 대내외적으로 활동 9~10회 개최 및 활동	25
	동아리가 대내외적으로 활동 7~8회 이하 개최 및 활동	20
	동아리가 대내외적으로 활동 6회 이하 개최 및 활동	15
예산집행	예산집행을 사용용도가 구체적이고 운영목적에 맞게 집행함	30
	예산집행을 사용용도가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목적에 맞게 집행함	25
	예산집행을 아예 하지 않음	20

(별첨2) 상별점 기준

구분	내용	점수
대표자회의	좋은 안건 제시	+3
	미참석	-5
	2회연속 미참여	-10
동아리 박람회	자원봉사 지원 동아리	+10
	참가	+5
	뒷정리미흡	-5
	타 동아리와 불화	-5
축제	참가동아리	+10
	뒷정리 미흡	-5
	타 동아리와 불화	-5
동아리방 관리	술병 및 취사도구 적발	-10
	전열기 사용 적발	-10
	숙박 적발	-10
	음주적발	-20
동아리 행사	행사진행	+10
	뒷정리 미흡	-5

(별첨3) 정규동아리 수

구분	내용	정규동아리 수
분과별 회원 수 (분과 전체 공통)	40명 이하	1
	41명 이상 80명 이하	2
	81명 이상 120명 이하	3
	121명 이상 160명 이하	4
	161명 이상 200명 이하	5
	201명 이상 240명 이하	6
	241명 이상 280명 이하	7
	281명 이상 320명 이하	8
	321명 이상 360명 이하	9
	361명 이상	10

(별첨4) 비대면 평가기준(신설 2021.10.06.)

구분	평가내용	점수
활동 적정성	활동내용이 매우 우수 (실적, 내용수준, 대내외적 활동 등)	35
	활동내용이 우수하다 (사진, 내역 등 증빙 충분)	30
	활동내용이 보통이다 (사진 내역 부분 부족한 부분)	25
	활동내용 및 보고서 미비 (증빙자료 없음)	20
활동내역	동아리가 대내외적으로 활동 10회 이상 개최 및 활동	25
	동아리가 대내외적으로 활동 8회 이하 개최 및 활동	20
	동아리가 대내외적으로 활동 6회 이하 개최 및 활동	15
	동아리가 대내외적으로 활동 4회 이하 개최 및 활동	10
	동아리가 대내외적으로 활동 2회 이하 개최 및 활동	5
예산집행	예산 집행을 사용용도가 구체적이고 운영목적에 맞게 집행함	20
	예산집행을 사용용도가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목적에 맞게 집행함	15
	예산집행이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않음	10
예산집행 률	예산집행률이 70% 이상 이뤄짐	20
	예산집행률이 50% 이하 이뤄짐	15
	예산집행률이 30% 이하 이뤄짐	10
	예산집행을 아예 하지 않음	5

(별첨5) 비대면 상별점 기준(신설 2021.10.06.)

구분	내용	점수
대표자회의	좋은 안건 제시	+5
	미참석	-10
	2회 연속 미참여	-20
동아리 박람회	자원봉사 지원 동아리	+10
	참가	+10
	뒷정리미흡	-5
	타 동아리와 불화	-5
축제, 행사	참가동아리	+10
	요청 자료 제출	+10
	뒷정리 미흡	-5
	타 동아리와 불화	-5
동아리방 관리	술병 및 취사도구 적발	-10
	전열기 사용 적발	-10
	숙박 적발	-10
	동아리방 무단출입	-20
	음주적발	-20
동아리 행사	행사진행	+10
	방역수칙준수	+5
	뒷정리 미흡	-5